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자가점유율과 복지지출의 관계

서 성 훈*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주택보유 수준이 그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과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을 종속변수로, 자가점유율을 독립변수로 활용했으며, 더 명료한 추정을 위해 아파트 중위 매매가, 인구수, 1인당 지방세 납부액,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 그리고 기초지방의회 다수당을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해당 변수들은 KOSIS, 지방재정365, 기초자치단체별 2020년 예산서 등을 통해 자료구득 하였으며, SPSS 27 프로그램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탐구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가점유율은 시 지역에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그리고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역(inverse)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가점유율이 도시유형(시·군·구)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복지 지출과 관련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요어: 자가점유율, 복지지출, 기초자치단체, 주택자산, 교환관계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bingo5934@naver.com)

1. 서론

소득과 자산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인간의 효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근로소득과 사업운영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 등을 의미하며, 자산은 개인이 소득을 통해 오랜 기간 축적하여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2년 가구의 평균자산 대비 평균 경상소득은 약 13.1%였으나 2022년에는 약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다. 기존문헌들은 이런 기조에 맞춰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과 복지 간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자산과 복지 간 교환적 관계(trade-off)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자산과 복지의 교환적 관계는 자산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왜 사적 자산이 증가할수록 공적복지지출이 줄어드는 것일까? 사적자산은 개인이 소득상실, 실업, 질병, 이혼 등 다양한 위험에 처했을 때 경제적 완충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사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개인적·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자산의 환금성을 통해 공적복지의 부족분을 스스로 보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복지증세가 필수 불가결한 공적복지에 욕구가 낮고, 이는 공적복지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는 사적자산 중 주택자산을 통한 자산형성을 도모해왔다. 주택은 가구에게 오랜 기간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증식의 매개체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주택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복지에 대한 주택자산의 영향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주택자산과 공적복지지출의 교환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주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자산 소유비율 중 하나의 지표인 자가점유율과 국가공적복지지출을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 부(-)적 관계가 있음을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주장한 바 있다(Kemeny, 1980; Castles, 1994; Conley&Gifford, 2006). 최근에는 국가 내 주택자산의 가격상승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영·미국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겪은 가구는 재분배와 사회보험의 공적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Ansell, 2014). 정리해보면, 주택자산의 보유 및 주택자산 가격상승이 국가 복지지출 및 개인의 복지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Ansell(2014)에 영향을 받아 가계자산수준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가계 자산수준이 높아질수록 재분배와 사회보험 확대에 대한 개인

의 복지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을 통제한 경우에도 그 부(-)적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이철등 등, 2018; 김항기 등, 2017; 양종민, 2022). 하지만 이때 가계자산은 주택 자산으로부터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 이유는 한국의 가계자산 구조가 주택자산에 매우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가계의 평균적인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의 약 3.4배를 차지하고, 그 실물자산에 대한 거주주택 자산의 비중은 약 60%이다. 즉, 주택자산이 가계자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또한, 주택자산의 가격 상승이 아닌 주택소유(ownership)자체가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문헌도 있다. 이승철(2022)은 주택자산을 보유한 경우 공적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종합해보면 국내 기존문헌들은 주택소유 및 가격상승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주택자산 소유 혹은 가격상승이 공적복지확대에 대한 개인의 복지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주택자산의 복지효과’로 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주택자산의 복지효과’란 주택자산을 소유한 가계는 복지증세가 필수적인 공적복지 확대에는 욕구가 낮아 사적시장을 통한 복지구매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전술한 기존연구는 주택자산 보유현황과 공적복지지출 간 관계를 국가단위에서만 살핀 한계점과 (주택)자산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주택자산 보유현황과 복지지출 간 관계가 실증적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 공적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공적복지지출에 대한 욕구는 기초자치정부가 복지지출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때, 기초자치단체 내 주택자산 소유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가점유율’을 활용하겠다. 자가점유는 본인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1가구 1주택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현대사회에서 복지지출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에 따르면 2008년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은 22.3%였으나 2020년에는 40.9%까지 상승하였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복지지출의 중요성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방식에는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의 교부금을 통한 매칭(matching)방식과 기초지자체 자체예산만으로 집행되는 방식이 있다.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으로 사회적·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진보단체장, 진보다수의회 등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비중에 양

(+)적 영향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홍성준 등, 2022; 문수진 등, 2015). 반면 기초자치단체 자체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에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구인배율이 높을수록 자체복지 사업예산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김경준 등, 2013).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하는 기초자치단체 내 주거자산 보유수준과 그 지방정부 복지지출 간 관계가 실증적으로 존재한다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현재까지 그 관계를 따져보는 문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시유형(시·군·구)에 따라 주택시장과 공적복지지출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가점유율과 복지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한다. 이때, 도시유형에 따라 주택시장이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 내 대략적인 주택가격과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다. 그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면 지역의 주택소유 수준과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간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논의한 본 논문의 함의를 제시할 수 있겠다.

2. 문헌연구

1) 자산과 주택자산

자산(Asset)은 자연인 혹은 법인이 소유하는 유·무형의 물품 및 권리 등을 의미한다. 자연인 중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계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성된다. 가계금융자산에는 물품형태인 현금과 권리형태인 예금, 주식, 연금 등이 포함된다. 반면, 가계실물자산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형체가 있는 자산만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가계실물자산으로 가구가 보유한 주택자산이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규모는 50,2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금융자산은 11,319만원(전체 대비 22.52%), 실물자산은 38,934만원(전체 대비 77.48%)이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가계자산은 금융자산 보다 실물자산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실물자산 중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평균 자산가액은 22,8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금융자산의 약 2배 수준이며, 가계 총 자산 대비 45.52%이다. 결론적으로 가계 총 자산에 대한 주택자산의 영향력이 매우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가구자산 구성 현황

| 구분 | | 금액(만원) | 구성비 |
|---------|-------------------|--------|-------|
| 평균 총 자산 | | 50,253 | 100 |
| 평균 금융자산 | 저축액 ¹⁾ | 8,099 | 16.12 |
| | 전·월세보증금 | 3,220 | 6.41 |
| | 계 | 11,319 | 22.52 |
| 평균 실물자산 | 거주주택 | 22,876 | 45.52 |
| | 기타 ²⁾ | 16,058 | 31.95 |
| | 계 | 38,934 | 77.48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1)

전술했듯이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구성요소 중 주거자산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단일 구성요소로 유일하게 30%를 초과한다. 왜 우리사회에서 가계자산의 주거자산 편향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많은 기존문헌에서 97년 외환위기와 그 후 경제부양을 위한 저금리·양적완화 정책이 그 시발적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김도균, 2018; 김진영, 2002; 정상희, 2003).

김도균(2018)은 과거부터 쌓아온 주택자산이 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가계의 안전자산으로써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한다. 80년대 부(wealth)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군사 정부는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중산층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했다. 80년대 도시근로자는 정부정책의 도움으로 자산형성 즉,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은 도시 중산층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후 97년 외환위기가 닥치고 금융시장이 잠식되자 일반 대중들은 부동산 자산을 금융자산 보다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도시중산층은 보유한 주택자산의 금융화(home-equity financialization)를 통해 실업 등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로 활용한 역사적 경험도 있다.

실증적으로, 외환위기 전·후 가계자산구성의 변동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2002)에서 대우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993년-1998년 사이 가계자산구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 1993년 거주주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약 11%였으나 1998년에는 약 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사회에서 90년대 중·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계자산의 주택자산 편향현상이 어느 정도 시작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 저축액에는 수시·적립·예치식 저축, 저축성·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기타저축이 포함된다. 수시·적립·예치식 저축이 전체 저축액 중 95.67%(7,748만원/전체자산 대비 15.42%)를 차지하고 있다.

2) 기타에는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계약금 및 증도금 납입액, 자동차 가액,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주택이외 부동산이 전체 기타 중 83.63%(13,430만원/전체 가계자산 대비 26.72%)으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시중은행은 부실채권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동산에 대한 가계의 유효수요를 이끌어냈다. 가계의 증가된 수요력은 인간 삶의 필수재이자 안정적 투자처인 주택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정장희(2003)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999년 10.85%인 반면 2002년에는 6.92%로 상당히 감소했다. 반면 예금은행 주택자금대출은 1999년 22,747십억 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45,678십억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금리가 낮아져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는 빚을 내서 안전자산인 주택자산을 구매한 것이다.

2) 주택자산의 복지효과

주택자산은 주택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안전적 투자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필수재이다. 역사적 사건, 시대적 배경과 함께 가계는 주택자산 보유를 위해 고군분투해왔으며, ‘내 집 마련’은 가계의 효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계에게 주택자산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만큼 기존문헌들은 주택자산이 파생시키는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주택자산이 생산하는 다양한 효과 중 복지효과에 대하여 그것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자산의 복지효과는 자산의 복지효과를 주택자산으로 한정시킨 것으로써 자산가격이 상승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공적복지확대에 대한 욕구가 낮아 사적시장을 통해 스스로 복지를 구매하고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택자산의 복지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초기 학자로 Kemeny(1980)을 들 수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주택자산 소유비율이 높은 국가는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주택을 통한 사적자산이 노후 소득보장의 매개체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가점유율과 복지국가 지수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가점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가의 총 소비지출 중 정부지출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OECD Observer 1972·1978과 Royal Commission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1997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이다. 하지만 Kemeny(1980)의 연구는 임대주택시장 유형에 따른 유형별 1개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단순비교 분석한 것으로써 그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Kemeny(1980)가 주장한 주택자산과 공적복지 간 교환적 관계(trade-off)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Castles(1998)는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수월해진 시점에서 그 교환적 관계가 실증적으로 존재하는지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관계를 분석했다. OECD 가입국 17개국

을 대상으로 주거자산소유(home-ownership)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총지출(total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간 상호관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효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세부적으로 사회보험 측면에서 연금(pension)도 유효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런 분석결과는 Kemeny(1980)의 주거자산과 복지 간 교환적 관계에 대한 주장과 사적자산이 노후 소득보장의 매개체로 활용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Castles(1994)가 주장한 주택자산의 복지적 효과는 소득불평등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것은 주택자산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또한 국가복지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onley&Gifford(2006)는 LIS(the Luxembourg Income Study)와 CWS(the Comparative Welfare State Data Set)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니계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GDP 대비 보건지출 등을 요인변수로 설정하고 그것이 자가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지출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자가점유율을 보였는데, 그들은 이를 주택자산이 사적보험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자산의 복지적 효과를 다루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Ansell(2014)의 연구가 다수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nsell(2014)은 주택자산의 가격이 사회정책 선호(social policy preference)와 정책결과(policy outcome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경험하는 주택자산 소유자들은 재분배와 사회보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승된 주택가격은 개인의 영구적 소득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단절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자가공급형(self-supplied) 사적보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ANES 2000-2004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Social Security Retirement Program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MSA·FHFA⁴⁾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지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영국에서도 유사했다. BHPS(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데이터를 활용하여 완전고용정책(Full-Employment)과 전반적인 정책이념(Ideology)⁵⁾에 대한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주택가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자산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에서는 은퇴 후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선호도가 감소하고 영국에서는 완전고용정책 및 그와 관련된 정부이념에 대한 지지(support)가 줄어드는 것이다.

3) 독립변수인 home-ownership에 대한 자료는 Hedman(1994)의 기존문헌 자료를 재이용했으며, 종속변수인 사회보호에 대한 총지출과 연금지출 자료는 OECD자료를 활용했다.

4) MSA는 th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FHFA는 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를 의미한다.

5) 전반적인 정책이념(Ideology)은 완전고용에 대한 선호와 함께 부자·빈자에 따른 다른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산업을 국유화해야 하는지, 강력한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보통사람들이 국부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된 복합 이념지수이다.

전술한 서구문헌들은 주택자산이 보험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Castles(1994)와 Conley&Gifford(2006)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주택자산과 복지지출 간 직접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문헌이고, Ansell(2014)은 국가 내 주택자산의 가치 상승분이 복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주택자산과 복지지출 간 직접적 실증연구 보다는 Ansell(2014)과 유사히 자산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대다수의 국내문헌은 가구총자산을 변수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한민국 가계는 주택자산에 매우 편향적인 자산구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가구총자산을 독립변수로 둔 문헌에서도 주택자산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국내에서는 개인들의 가계자산 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확대 태도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가계의 자산가격이 높아질수록 재분배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철승 등(2018)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재분배태도, 선별복지선호, 그리고 복지증세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다.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위로짓 모형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소득과 자산 중 자산만이 종속변수인 재분배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산 수준과 복지태도의 교환적 관계는 소득(가처분소득)을 통제 한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항기 등(2017)은 자산과 부채가 재분배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소득 변수를 통제하였는데, 자산가격이 높아질수록 재분배태도는 낮아지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해당 연구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위로짓모형 분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구소득 보다 가계자산 수준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 확대 등의 공적복지에 대한 욕구는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공적복지에 대한 내용을 '재분배'와 '사회보험'으로 세분화하여 자산수준이 공적보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문헌도 있었다. 양종민(2022)은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보험기능-재분배 찬성집단'에 속할 확률은 줄어들고, '보험기능 반대, 재분배 찬성집단'에 속할 확률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기능 중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정부지출 축소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기능, 재분배,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3개 집단⁶⁾을 종속변수로, 소득·자산·부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한 분

6) 양종민(2020)에서는 보험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 간 관계성을 LCA분석을 통해 3가지 잠재집단으로 도출하였다. 그 3가지로 (1)보험기능-재분배-복지증세 찬성형, (2)보험기능-복지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 (3)보험기능-복지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이 있다. 잠재집단별 태도변수 점유비율을 보면, (2)보험기능-복지증세 반대, 재분배찬성형은 보험기능 중 특히 국민연금(기초연금) 정부지출 축소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

석결과이며,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복지적 효과가 아닌 주택자산 소유 자체가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이승철, 2022). 주택 점유 형태별(자가/전세/월세)로 복지태도의 포괄적 측정지표를 단순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전·월세보다 자가일 때 복지를 위한 정부 개입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즉, 자가 소유자인 경우 재분배 선호가 비소유자에 비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도균(2022)은 가계자산 수준과 주택자산 소유가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산규모가 클수록 '복지지출 확대 및 증세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주택자에 비해 무주택자는 '복지지출 확대 및 증세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확대 태도와 복지증세 태도를 기반으로 도출한 4가지 유형⁸⁾을 종속변수로, 소득·자산·부채·주택소유 유무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항로지분분석한 결과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사회분배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지금까지 자산(주택자산)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에 대한 국내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자산가격(price-appreciation)의 자기복지(self-welfare)형이다. 이 유형은 가계자산의 가격상승이 개인의 복지 선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김항기 등(2017)과 이철승 등(2018)에서는 가계 자산가격이 높아질수록 국가 개입으로 인한 재분배 확대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공적보험 특히 연금보험(기초연금 포함)에 대한 선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문헌(양종민, 2022)도 있었다.

다음으로, 자가점유(owner-occupation)의 자기복지(self-welfare)형이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본인소유 가구인 경우, 임차(rental)가구에 비해 복지확대에 대한 욕구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이승철(2022)에서 전·월세 가구 보다 자가 가구일 때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개입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점유 가구는 재분배 선호가 임차가구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도균(2022)은 무주택자인 경우 1주택자·다주택자에 비해 복지증세를 기반 한 공적복지 지출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다(61.00%).

7)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하여 얻은 데이터를 단순회귀분석하였다.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 책임을 묻는 질문에 동의·매우 동의 비율은 50.9%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68.9%, 월세는 57.5%였다.

8) 김도균(2022)는 종속변수로 ①적극적 복지유형(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증세 모두 찬성), ②증세 없는 복지유형(복지지출 확대는 찬성, 복지증세는 반대), ③소극적 복지유형(복지지출 현상유지 또는 축소, 복지증세 찬성), ④적극적 반복지유형(복지지출 현상유지 또는 축소, 복지증세 반대), 총 4가지 유형을 두었다.

[표 2] 주택자산의 복지효과에 관한 국내 기존문헌 유형화

| 구분 | 문헌 | 분석자료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분석방법 |
|-------------|-------------|--------------------|--------------------------|------------------------|----------------|
| 자산가격의 자기복지형 | 이철승 등(2018) |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 | 재분배선호 | 소득, 자산 | 순위로짓모형 |
| | 김향기 등(2017) | 상동 | 재분배태도 | 자산, 부채 | 순서형로짓 회귀분석 |
| | 양종민(2022) | 상동 | 복지태도에 따른 3개 집단 | 소득, 자산, 부채 |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
| 자기점유의 자기복지형 | 이승철(2022) | 일반인 500명 면접조사 | 복지태도 | 주택 점유형태 | 회귀분석 |
| | 김도균(2022) | 한국사회분배 인식조사 | 복지확대·증세 태도에 따른 4가지 유형 | 소득, 자산, 부채, 주택소유 유무 | 다항로지스틱 |

3)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공적복지의 상당수는 다양한 재정방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출되고 있다. 중앙정부·광역자치정부의 top-down·matching 방식을 통한 복지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초자치단체 순수 자체예산으로 집행되는 복지지출도 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출되는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자료 중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22.3%였으나 2020년에는 40.9%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이런 동향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시되는 복지지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문헌들은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다양한 요인으로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기초자치단체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주택자산의 복지효과가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결정요인의 사회적 환경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문헌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전체)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에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주로 양(+)적 영향을, 경제적 요인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준 등(2022)은 226개 전국 기초자치체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종속변수로, 사회·경제적 요인/정치적 요인 등을 요인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구규모가 클수록/단체장이 진보정당인 경우/단체장이 재선인 경우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예산지출을 결정하는데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지방세 수입/재정자주도/점증주의 요인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데 부(-)적 영향을 미쳤다.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살펴봐도 복지지출 결정요인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은 복지지출과 양

(+)적 관계를, 경제적 요인은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진 등(2015)은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74곳을 대상으로 2008-2012년 간 사회복지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사회복지예산지출에 유효한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인구수/장애인인구비율/지방선거실시/진보다수 기초의회는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련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예산지출비율을 종속변수로 정치적/사회·경제적/행·재정적 요인을 요인변수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 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자체사회복지예산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겠다. 기초자치단체 자체사회복지예산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예산확보가 중요했다.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독립성이 높아질수록 자체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경준 등(2013)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⁹⁾이 자체사회복지예산¹⁰⁾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2012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예산비를 종속변수로, 인구·사회적/경제·재정적/정치적 요인 등을 요인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자체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임진영 등(2018)은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의회 의원수가 많을수록/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을수록/진보단체장인 경우 자체사회복지예산비중¹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재정365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자료 등을 통해 얻은 2008-2015 자료를 기반으로 패널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기존문헌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자체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은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과는 차이점이 있으며, 자체예산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능력에 상당히 의존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자체사회복지예산지출은 어떤 분야에 어떤 급여 유형으로 지출되는지 살펴보겠다. 윤성원 등(2019)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자체사업 수와 그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가족분야, 보건분야, 노령분야 순으로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히 살펴보면 가족분야에는 한부모·다문화 센터운영, 어린이집 운영·지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양육비 지원이 있다. 보건분야는 지역보건소 운영과 예방접종이 있으며, 노령분야로

9) 구인배율은 지역 취업희망자수 대비 지역 내 일자리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 내 일자리수가 많다는 것을 지방세 확보가 증가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10) 김경준 등(2013)에서는 '자체사회복지예산'을 기초자치단체 전체 복지예산 대비 자체사회복지예산의 비율로 산정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구득하였다.

11) 김경준 등(2013)과 달리 임진영 등(2018)에서는 종속변수인 '자체사회복지예산비중'을 기초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시·군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노인생활시설 설치·운영, 노인 돌봄종사자 인건비 지원, 경로당 운영 등이 있었다. 또한, 자체 사회복지의 급여유형은 현물 94.4%, 현금 5.6%로 현물급여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7년 사회복지사업을 OECD SOCX기준에 따라 9개 영역별로 세분류한 후 사업별 재원 속성을 파악하여 다각도로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문헌들을 크게 ①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과 ②기초자치단체 자체사회복지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과 ② 각 예산별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유효한 요인들을 먼저 탐구한 후, 광역시·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유효한 요인들까지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분류해보면, 사회적 요인(인구수 등), 경제적 요인(1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 그리고 정치적 요인(단체장 소속정당, 지방의회 다수당 등)이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결정요인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에 대한 주택자산 보유현황 지표 중 하나인 자가점유율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지역의 높은 자가점유율은 지역주민의 주택자산 보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높은 주택보유 수준을 보인 국가는 낮은 공적복지지출의 경향이 있었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자산(주택자산)과 공적복지 확대 욕구가 부(-)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본 연구는 상당수의 공적복지지출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시되는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주택자산의 보유현황과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간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그 관계가 실증적으로 존재하는지 점검해보려 한다.

[표 3]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문헌

| 구분 | 문헌 | 분석자료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분석방법 | 연구결과 | |
|-------------------------------|-----------------|-----------------------|----------------------------------|----------------------------|----------------------|-----------------------------------|----------------------------------|
| | | | | | | 양(+) 적 | 부(-) 적 |
| 기초지자체 복지예산 결정요인 | 홍성준 등 (2022) | 지방재정 365 등 | 226개 기초자치정부사 회복지예산비중 | 사회·경제· 정치적 요인 | FGLS모형 패널 회귀분석 | 인구규모, 진보단체장, 재선단체장 | 1인당 지방세 수입, 재정자주도, 점증주의 |
| | 문수진 등 (2015) | 기초지자체 재정관련 통계 등 | 광역시 내 기초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지출비율 | 사회·경제· 정치·행정· 재정적 요인 | 회귀분석 | 인구수, 장애인비율, 선거실시, 진보다수 기초의회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 기초지자체 자체사회 복지예산 결정요인 | 김경준 등 (2013)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등 | 230개 기초지자체 자체사업예산비 | 인구·사회· 경제·재정· 정치적 요인 | 회귀분석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 | - |
| | 임진영 등 (2018) | 지방재정 365 등 |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자체사회복지예 산비중 | 정치적· 비정치적 요인 | 패널 회귀분석 | 지방의회 의원수, 노령인구비, 진보단체장 | 1인당 지방세 납부액 |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으로 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 내 74개 자치구·군, 75개 시(市), 77개 군(郡)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대상은 2020년으로 한다.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가점유율에 대한 자료습득의 한계가 있었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임기 중반부이기 때문이다.¹²⁾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과 지역 내 주택자산의 보유현황이 부(-)적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다수 서구 문헌에서 국가 간 비교연구 시 주택자산 보유현황과 공적복지지출 간 부(-)적 관계가 존재했으며, 국내문헌에서도 주택자산과 공적복지확대 욕구 간 부(-)적 관계가 있었다. 공적복지지출이 상당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출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주택자산 보유현황과 그 지방정부 복지지출 간 부(-)적 관계가 있을 것임을 추론하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기초자치단체 ①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과 ②경상일반재원¹³⁾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자가점유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추정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아파트 중위매매가, 인구수,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단체장 소속정당 그리고 지방의회 다수당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겠다. 단, 기초자치단체 내 아파트 중위매매가는 군(郡)지역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자치구·군 및 시(市) 지역의 분석에만 활용하겠다. 이 분석을 위해 SPSS 27을 사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변수 간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2) 변수설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이다. 먼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이란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

12)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은 지방선거 실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문수진 등, 2015).

13) 자체사회복지지출은 기초자치정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닌 경상일반재원을 분모로 활용하겠다. 이때, 경상일반재원은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계산되었다.

예산의 비중을 일컫는 것으로,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의 합계액이다. 해당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재정연감 통계자료를 통해 수집했다.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은 기초자치단체 경상일반재원 대비 자체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일컫는다. 여기서 경상일반재원이란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합친 값으로써, 최대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출의 가용재원을 나타내고자 활용했다.

또한, 자체사회복지예산은 전술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통합적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기존문헌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윤성원 등(2019)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 세부사업의 지출자료를 전수 검토하여 OECD SOCX 기준에 맞추되, 보건분야는 제외했다. 그것은 2019-2020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관리에 자치단체 예산이 편향적으로 집중되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초지자체 내 주택자산 보유현황과 그 지방정부 자체사회복지지출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추정하는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체사회복지예산을 계산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상세사업내역을 전수조사하여 복지사업 중 예산구성방식이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와 matching방식인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기초지자체 자체예산만으로 운영되는 사업만 합했다.¹⁴⁾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회복지예산은 주로 중앙정부의 복지제공 부족분을 보충하는 성격이 짙었으며, 지역 내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보훈, 보육 및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 현물형태의 사회서비스가 대부분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상세사업내역서 자료는 해당 지방정부 공식 홈페이지 내 예산서 정보공개를 통해 습득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자가점유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이것은 자가점유율이 타 주택 관련 지표인 주택보급율, 자가보유율 보다 1가구 1주택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가점유란 주거점유형태가 본인 소유인 것을 의미하는데, 자가점유율은 기초자치단체 총 가구 수 대비 자가점유 가구 수로 계산된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통해 구득하였다. 자가점유율 또한 지역 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현 시점의 자료구득 한계 상 자가점유율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겠다.

(3) 통제변수

대한민국은 기초자치단체별 주택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군

14) 분야별 과(課)의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주요도시는 수 억 원대를 호가하는 반면, 비수도권 군(郡)지역은 수 천만 원도 채 하지 않는 주택이 많다. 따라서 주거자산 소유와 복지지출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택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은 유형별(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면적별/읍·면·동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해 가격의 획일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 내 형성된 대략적인 주택시세정도만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중위매매가’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때 변수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규성을 높이고 분석에서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 로그(ln)값으로 처리하였다. 해당 변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 내 주택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60㎡초과 135㎡이하 아파트 중위매매가로 구성되었다. 단, 군(郡)지역 아파트 중위매매가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사회적 요인으로 ‘인구수’는 도시규모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다수의 문헌에서 기초지자체가 복지예산 혹은 자체복지예산을 결정하는데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성준 등, 2022; 문수진 등, 2015; 임진영 등, 2018). 또한, 도시규모가 크다는 것은 대도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도시인 경우 높은 주택가격으로 낮은 주택소유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택자산 소유와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간 관계를 살펴보는데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변수 또한 정규성과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로그(ln)값 처리하였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통해 얻었다.

경제적 요인으로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을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지방세액 전체를 지역 내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는 지방재정365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기존문헌에서 기초지자체 복지지출 결정요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홍성준 등, 2022; 문수진 등, 2015; 임진영 등, 2018)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를 구성하고 있는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즉,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또한 지역 내 주거자산 소유와 복지지출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어 통제하고자 한다.

정치적 요인으로서 ‘단체장 소속정당’, ‘지방의회 다수당’을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기초자치단체장 혹은 기초의회 다수당이 보수보다 진보인 경우 기초지방정부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홍성준 등, 2022; 문수진 등, 2015; 임진영 등, 2015), 기초자치단체 예산 자체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념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는 만큼 그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고자 한다. ‘단체장 소속정당’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을, ‘지방의회 다수당’은 기초자치단체 의회 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을 의미한다. 해당 변수들은 선거관리위원회 2018년 제7회 전

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을 진보정당(0)으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보수정당(1)으로 집계했다.

[표 4] 주요변수 설명

| 변수 구분 | 변수명 | 변수설명 | 자료출처 |
|-------|---------------------|---|-------------------------------|
| 종속 변수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 $\frac{\text{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text{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 1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
| |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 $\frac{\text{기초자치단체 자체사회복지예산}}{\text{기초자치단체 경상일반재원}} * 100$ | 기초지자체 연도별 예산서 정보공개 |
| 독립 변수 | 자가점유율 | $\frac{\text{자가점유 가구수}}{\text{기초자치단체 총 가구수}} * 100$ | 인구주택 총조사 |
| 통제 변수 | 로그(ln)아파트 중위매매가 | 60㎡초과 135㎡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의 중간 값 | 한국부동산원 주택동향 마이크로데이터 |
| | 로그(ln)인구수 | 기초자치단체 총 인구수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 |
| | 1인당 지방세 납부액 | $\frac{\text{기초자치단체 전체 지방세}}{\text{기초자치단체 내 주민등록인구수}}$ | 지방재정 365 |
| | 단체장 소속 정당 | 0 = 진보 / 1 = 보수 | 선거관리위원회,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
| | 지방의회 다수당 | 0 = 진보 / 1 = 보수 | |

4.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1)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은 평균 37.00%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71.50%(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최소값은 9.20%(경상북도 울릉군)로 나타났다. 상위 30 곳은 모두 서울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30위권 내에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상위 13위 송파구(63.9%)와 상위 16위 동작구(62.7%)만 있었는데, 이는 절대적인 사회복지예산금액이 아닌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 30위는 대부분 비수도권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내 군지역도 일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지역은 하위 7위 인천광역시 옹진군(17.5%)과 하위 21위 연천군(19.4%)이다.

[표 5] 기초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 상위 | 시·군·구 | 사회복지 예산비율 | 하위 | 시·군·구 | 사회복지 예산비율 |
|----|----------|--------------|----|---------|--------------|
| 1 | 미추홀구(인천) | 71.5% | 1 | 울릉군(경북) | 9.2% |
| 2 | 사하구(부산) | 71.2% | 2 | 신안군(전남) | 13.8% |
| 3 | 북구(광주) | 70.9% | 3 | 인제군(강원) | 16.3% |
| 4 | 북구(부산) | 70.8% | 4 | 군위군(경북) | 16.8% |
| 5 | 서구(대전) | 69.9% | 5 | 곡성군(전남) | 16.9% |
| 6 | 중구(대전) | 68.4% | 6 | 양구군(강원) | 17.5% |
| 7 | 동구(대전) | 66.8% | 7 | 옹진군(인천) | 17.5% |
| 8 | 남동구(인천) | 65.8% | 8 | 진도군(전남) | 17.6% |
| 9 | 연제구(부산) | 65.6% | 9 | 철원군(강원) | 18.0% |
| 10 | 사상구(부산) | 65.5% | 10 | 화천군(강원) | 18.1% |
| 11 | 부평구(인천) | 64.8% | 11 | 합천군(경남) | 18.3% |
| 12 | 남구(광주) | 64.6% | 12 | 부안군(전북) | 18.5% |
| 13 | 송파구(서울) | 63.9% | 13 | 고성군(강원) | 18.6% |
| 14 | 중구(울산) | 63.2% | 14 | 봉화군(경북) | 18.7% |
| 15 | 유성구(대전) | 62.8% | 15 | 장수군(전북) | 18.8% |
| 16 | 동작구(서울) | 62.7% | 16 | 평창군(강원) | 18.8% |
| 17 | 동래구(부산) | 62.6% | 17 | 괴산군(충북) | 18.9% |
| 18 | 영도구(부산) | 62.1% | 18 | 성주군(경북) | 19.2% |
| 19 | 대덕구(대전) | 60.9% | 19 | 보성군(전남) | 19.4% |
| 20 | 금정구(부산) | 60.7% | 20 | 해남군(전남) | 19.4% |
| 21 | 계양구(인천) | 60.5% | 21 | 연천군(경기) | 19.4% |
| 22 | 북구(울산) | 59.4% | 22 | 순창군(전북) | 19.7% |
| 23 | 동구(부산) | 58.8% | 23 | 함양군(경남) | 19.7% |
| 24 | 서구(광주) | 58.0% | 24 | 횡성군(강원) | 19.8% |
| 25 | 연수구(인천) | 57.7% | 25 | 영양군(경북) | 19.9% |
| 26 | 서구(인천) | 57.6% | 26 | 하동군(경남) | 19.9% |
| 27 | 동구(울산) | 56.1% | 27 | 임실군(전북) | 19.9% |
| 28 | 달서구(대구) | 56.0% | 28 | 산청군(경남) | 20.0% |
| 29 | 동구(대구) | 55.4% | 29 | 고창군(전북) | 20.0% |
| 30 | 광산구(광주) | 55.2% | 30 | 함평군(전남) | 20.1% |

주: 위의 표는 기초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의 상위30·하위30을 나타낸 것이다. 표의 좌측은 상위30으로, 우측은 하위30으로 구성하였다.

(2)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은 평균 3.59%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9.20%(서울특별시 중구), 최소값은 0.25%(경상북도 청도군)였다. 전체적인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비해 도 시유형(시·군·구)에 관계없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었다. 상위 30위를 살펴보면 5곳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시 내 자치구, 경기도 내 주요도시, 그리고 충청도 내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사회복지예산비율에서 충청권의 약진이 있었던 것은 인근지역의 외부효과로 인한 것으로 추론해본다. 최정은 등(2020)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외부요인이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 수준이 인근 기초자치단체 자체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하위 30위에 광역시 내 자치구가 상당 수 있었다. 이런 경향은 앞서 살펴보았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에서 광역시 내 자치구들이 매우 높은 지출수준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6] 기초자치단체별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 상위 | 시·군·구 | 자체사회복지 예산비율 | 하위 | 시·군·구 | 자체사회복지 예산비율 |
|----|---------|----------------|----|----------|----------------|
| 1 | 중구(서울) | 13.32% | 1 | 청도군(경북) | 0.25% |
| 2 | 기장군(부산) | 10.36% | 2 | 서구(대구) | 0.63% |
| 3 | 동작구(서울) | 8.99% | 3 | 중구(대구) | 0.67% |
| 4 | 의왕시(경기) | 8.94% | 4 | 정읍시(전북) | 0.72% |
| 5 | 마포구(서울) | 8.19% | 5 | 남구(대구) | 0.76% |
| 6 | 울주군(울산) | 8.17% | 6 | 금정구(부산) | 0.84% |
| 7 | 청주시(충북) | 8.14% | 7 | 봉화군(경북) | 0.93% |
| 8 | 성남시(경기) | 8.10% | 8 | 칠곡군(경북) | 0.97% |
| 9 | 강남구(서울) | 8.05% | 9 | 영도구(부산) | 1.00% |
| 10 | 영동군(충북) | 7.93% | 10 | 상주시(경북) | 1.11% |
| 11 | 서초구(서울) | 7.82% | 11 | 사하구(부산) | 1.14% |
| 12 | 서구(광주) | 7.61% | 12 | 군산시(전북) | 1.19% |
| 13 | 제천시(충북) | 7.60% | 13 | 동구(대전) | 1.21% |
| 14 | 과천시(경기) | 7.51% | 14 | 부안군(전북) | 1.22% |
| 15 | 송파구(서울) | 7.03% | 15 | 중구(부산) | 1.24% |
| 16 | 동해시(강원) | 6.78% | 16 | 화순군(전남) | 1.25% |
| 17 | 하남시(경기) | 6.77% | 17 | 성주군(경북) | 1.26% |
| 18 | 용산구(서울) | 6.76% | 18 | 함평군(전남) | 1.27% |
| 19 | 증평군(충북) | 6.81% | 19 | 고흥군(전남) | 1.31% |
| 20 | 화천군(강원) | 6.42% | 20 | 울릉군(경북) | 1.32% |
| 21 | 오산시(경기) | 6.39% | 21 | 양구군(강원도) | 1.33% |
| 22 | 강동구(서울) | 6.35% | 22 | 서구(부산) | 1.36% |
| 23 | 음성군(충북) | 6.34% | 23 | 동래구(부산) | 1.37% |
| 24 | 단양군(충북) | 6.22% | 24 | 동구(울산) | 1.39% |

| | | | | | |
|----|----------|-------|----|---------|-------|
| 25 | 영등포구(서울) | 6.14% | 25 | 사상구(부산) | 1.41% |
| 26 | 논산시(충북) | 6.07% | 26 | 고령군(경북) | 1.41% |
| 27 | 광명시(경기) | 5.99% | 27 | 의령군(경남) | 1.42% |
| 28 | 구로구(서울) | 5.59% | 28 | 산청군(경남) | 1.42% |
| 29 | 노원구(서울) | 5.85% | 29 | 구례군(전남) | 1.43% |
| 30 | 진천군(충북) | 5.83% | 30 | 중구(울산) | 1.52% |

주: 위의 표는 기초자치단체별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의 상위30·하위30을 나타낸 것이다. 표의 좌측은 상위30으로, 우측은 하위30으로 구성하였다.

(3) 자가점유율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가점유율은 평균 64.36%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31.72%(서울특별시 관악구), 최대값은 87.42%(전라남도 보성군)이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과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 및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의 자가점유율은 낮은 수준, 비수도권 군 지역 자가점유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 간 주택가격의 차이와 지역 내 노령인구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본다.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경기도 내 주요도시, 그리고 광역시 내 자치구는 인구과밀화현상 등으로 절대적인 주택 수부족(shortage)과 최근 이어진 부동산 과열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은 지역주민 특히 사회초년생 등이 자가점유할 기회를 박탈한다. 그 결과, 자가점유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하위 30위들은 대부분 비수도권 군 지역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택구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또한, 삶의 단계에 따라 가족확대기인 중·장년기에 주택을 구매해서 자가점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이 많은 군 지역에서는 자가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기초자치단체별 자가점유율

| 하위 | 시·군·구 | 자가점유율 | 상위 | 시·군·구 | 자가점유율 |
|----|---------|--------|----|---------|--------|
| 1 | 관악구(서울) | 31.72% | 1 | 보성군(전남) | 87.42% |
| 2 | 용산구(서울) | 34.10% | 2 | 의성군(경북) | 86.92% |
| 3 | 강남구(서울) | 36.58% | 3 | 강진군(전남) | 86.49% |
| 4 | 광진구(서울) | 36.66% | 4 | 합천군(경남) | 86.47% |
| 5 | 중구(서울) | 38.97% | 5 | 고흥군(전남) | 86.40% |
| 6 | 송파구(서울) | 39.34% | 6 | 해남군(전남) | 86.20% |
| 7 | 마포구(서울) | 39.72% | 7 | 함평군(전남) | 85.64% |
| 8 | 성동구(서울) | 40.10% | 8 | 군위군(경북) | 85.54% |
| 9 | 강서구(서울) | 41.38% | 9 | 청도군(경북) | 85.47% |

| | | | | | |
|----|----------|--------|----|---------|--------|
| 10 | 금천구(서울) | 41.62% | 10 | 진도군(전남) | 85.34% |
| 11 | 과천시(경기) | 41.62% | 11 | 진안군(전남) | 84.59% |
| 12 | 동대문구(서울) | 41.97% | 12 | 영양군(경북) | 84.41% |
| 13 | 강동구(서울) | 42.74% | 13 | 봉화군(경북) | 84.19% |
| 14 | 동작구(서울) | 42.89% | 14 | 장흥군(전남) | 83.33% |
| 15 | 성남시(경기) | 43.20% | 15 | 산청군(경남) | 83.09% |
| 16 | 하남시(경기) | 43.31% | 16 | 남해군(경남) | 82.98% |
| 17 | 영등포구(서울) | 43.39% | 17 | 신안군(전남) | 82.72% |
| 18 | 서초구(서울) | 44.36% | 18 | 구례군(전남) | 82.69% |
| 19 | 중랑구(서울) | 44.37% | 19 | 하동군(전남) | 82.11% |
| 20 | 남구(대구) | 45.03% | 20 | 곡성군(전남) | 82.09% |
| 21 | 종로구(서울) | 45.04% | 21 | 보은군(충북) | 82.08% |
| 22 | 유성구(대전) | 45.31% | 22 | 고창군(전북) | 82.04% |
| 23 | 서대문구(서울) | 47.18% | 23 | 담양군(전남) | 82.04% |
| 24 | 강북구(서울) | 47.62% | 24 | 영덕군(경북) | 81.88% |
| 25 | 성북구(서울) | 48.54% | 25 | 순창군(전북) | 81.56% |
| 26 | 중구(부산) | 48.99% | 26 | 부안군(전북) | 81.46% |
| 27 | 동구(대전) | 49.14% | 27 | 청양군(충남) | 81.42% |
| 28 | 울릉군(경북) | 49.61% | 28 | 강화군(인천) | 81.37% |
| 29 | 양천구(서울) | 50.08% | 29 | 부여군(충남) | 81.27% |
| 30 | 중구(대구) | 50.35% | 30 | 의령군(경남) | 81.06% |

주: 위의 표는 기초자치단체별 자가점유율의 상위30·하위30을 나타낸 것이다. 표의 좌측은 하위30으로, 우측은 상위30으로 구성하였다.

[표 8] 기술·통계 분석결과_비율형 변수

| 변수명 | N | 평균 | 분산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 226 | 37.00 | 226.29 | 15.04 | 9.20 | 71.50 |
|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 226 | 3.59 | 4.24 | 2.06 | 0.25 | 13.32 |
| 자가점유율(%) | 226 | 64.36 | 163.13 | 12.77 | 31.72 | 87.42 |
| 로그(ln) 아파트 중위 매매가 | 147 ¹⁵⁾ | 12.62 | 0.3 | 0.55 | 11.81 | 14.38 |
| 로그(ln) 인구수 | 226 | 11.81 | 1.13 | 1.06 | 9.13 | 13.98 |
| 1인당 지방세 납부액(천원) | 226 | 591.11 | 73,651.08 | 271.39 | 148 | 1,408 |

15) 전국 자치구·군 그리고 시 지역은 모두 149곳이나, 인천광역시 내 강화군·옹진군에 대한 아파트 중위 매매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9] 기술·통계 분석결과_명목형 변수

| 변수명 | N | 진보 | 보수 | 무소속 | 기타 ¹⁶⁾ |
|----------|-----|-----|----|-----|-------------------|
| 단체장 소속정당 | 226 | 160 | 59 | 7 | - |
| 지방의회 다수당 | 226 | 164 | 45 | - | 17 |

2) 회귀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 내 자가점유율과 그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①자치구·군 지역, ②시 지역, ③군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그것은 앞 선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는 도시유형(시·군·구)에 따라 복지지출 규모 및 자가점유율의 차이가 선명하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복지지출 지표 중 하나인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자치구·군(n=72)에서는 자가점유율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t=5.77$, $p>.05$). 하지만 로그(ln)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t=-3.262$, $p<.01$ 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택소유 그 자체보다는 지역 내 형성된 주택가격이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자가점유율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진 않았지만 아파트 중위 매매가와 역(inverse) 방향으로 사회복지예산비율과 관계를 가지는 것도 괄목할만한 분석결과이다.

다음으로, ② 시 지역(n=75)에서 자가점유율은 $t=-3.752$, $p<.001$ 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귀식의 설명력은 77.4%였으며, 자가점유율이 1%p 높아질수록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은 0.332%p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로그(ln) 아파트 중위매매가는 $t=2.620$, $p<.05$ 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치구·군 분석과 대조적으로 시 지역에서는 자가점유율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부(-)적 영향을, 아파트 중위매매가는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③ 군 지역(n=77)에서 자가점유율은 $t=-1.168$, $p>.05$ 로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아파트 중위 매매가를 변수로 활용하지 못해 그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

16) 지방의회 다수당이 진보, 보수로 나누어지지 않고 같은 수를 점하고 있는 경우(동수)를 '기타'로 집계하여 나타냈다.

[표 10]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를 다중회귀분석 결과

| 변수 | 자치구·군 | | 시 | | 군 | |
|---------------------|-----------|-----------|-----------|-----------|-----------|-----------|
| | B | t(p) | B | t(p) | B | t(p) |
| (상수) | 96.373 | 2.800** | -49.192 | -2.057* | -46.579 | -4.724*** |
| 자가점유율 | .073 | .577 | -.332 | -3.752*** | -.055 | -1.168 |
| 로그(ln) 아파트 중위매매가 | -7.924 | -3.262** | 3.942 | 2.620* | - | - |
| 로그(ln) 인구수 | 4.502 | 3.015** | 5.296 | 8.265*** | 6.693 | 8.004*** |
| 1인당 지방세 납부액 | -.017 | -5.249*** | -.014 | -6.399*** | .004 | 1.726 |
| 단체장소속정당* 진보 | 2.484 | 1.117 | -1.106 | -.658 | -.296 | -.336 |
| 지방의회다수당* 진보 | 4.253 | 2.038* | 4.459 | 2.672** | -1.262 | -1.405 |
| N | 72 | | 75 | | 77 | |
| adj. R ² | .618 | | .774 | | .524 | |
| F | 20.173*** | | 43.339*** | | 17.710*** | |

주: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단체장소속정당*보수, 지방의회다수당*보수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지출 지표 중 하나인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자치구·군(n=72)에서는 자가점유율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243, p>.05). 또한, 로그(ln)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t=3.54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택소유 그 자체보다는 지역 내 형성된 주택가격이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술했던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아파트 중위매매가 변수가 종속변수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② 시 지역(n=75)에서 자가점유율은 t=-3.373, p<.01로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귀식의 설명력은 35.2%였으며, 자가점유율이 1%p 높아질수록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은 0.109%p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로그(ln) 아파트 중위매매가는 t=2.203, p<.05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전술했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③ 군 지역(n=77)에서 자가점유율은 t=-2.668, p<.01로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

력은 24.2%이며, 자가점유율이 1%p 높아질수록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은 .055%p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타 도시유형과 달리 군 지역에서는 지역의 주택가격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표 11]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다중회귀분석 결과

| 변수 | 자치구·군 | | 시 | | 군 | |
|---------------------|-----------|-----------|----------|----------|----------|-----------|
| | B | t(p) | B | t(p) | B | t(p) |
| (상수) | -44.447 | -4.995*** | 1.703 | .195 | .771 | 3178 |
| 자가점유율 | .008 | .243 | -.109 | -3.373** | -.055 | -2.668** |
| 로그(ln) 아파트 중위매매가 | 2.227 | 3.547*** | 1.209 | 2.203* | - | - |
| 로그(ln) 인구수 | 1.273 | 3.296** | -.455 | -.1947 | .548 | 1.495 |
| 1인당 지방세 납부액 | .006 | 7.668*** | -.001 | -1.080 | .000 | .266 |
| 단체장소속정당* 진보 | -.291 | -.507 | -.160 | -.261 | -.899 | -2.326* |
| 지방의회다수당* 진보 | 1.498 | 2.777** | .595 | .978 | 1.503 | 3.8169*** |
| N | 72 | | 75 | | 77 | |
| adj. R ² | .665 | | .352 | | .242 | |
| F | 24.454*** | | 7.696*** | | 5.843*** | |

주: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단체장소속정당*보수, 지방의회다수당*보수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내 주택자산 보유수준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간 관계가 실증적으로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종속변수를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과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2가지로, 독립변수는 기초자치단체 자가점유율로 설정했다. 또한, 지역 내 대략적인 주택시세를 나타내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 결정요인인 인구수,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단체장 소속정당, 지방의회 다수당을 통제 변수로 활용했다. 이때, 아파트 중위 매매가 그리고 인구수는 값이 너무 커 정규성을 높이고 정확한 분석 값을 얻기 위해 로그(ln)값으로 처리하였다. SPSS 27 프로그램을 통해 변수들의 기술 통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이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

율'은 평균 37.0%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71.50%(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최소값은 9.20%(경상북도 울릉군)였다.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은'은 평균 3.59%이며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 중구(9.20%)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청도군(0.2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가점유율'은 평균 64.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31.72%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대값은 87.42%로 전라남도 보성군이였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세 주요 변수들이 도시유형(시·군·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술했듯이 도시유형에 따라 주요 변수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자가점유율의 복지지출에 대한 명확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주택가격 또한 도시유형(시군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시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자가점유율이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자가점유율은 시 지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32, p<.001$). 반면, 로그(ln)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자치구·군에서 부(-)적 영향을, 시 지역에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유형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자가점유율은 시 지역에서 $t=-3.373, p<.01$ 그리고 군 지역에서 $t=-2.668,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군 지역은 데이터 부존재로 지역 내 주택가격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 로그(ln)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자치구·군과 시 지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가점유율은 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사회복지·자체사회복지 모두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때 로그(ln)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항상 자가점유율과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주목해볼만한 분석결과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가점유율이 2가지 종속변수 모두와 양(+)-적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자가점유율이 기초자치단체 도시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전술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시사점이 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내 주택보유현황 지표 중 하나인 자가점유율은 시 단위에서 복지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가점유율은 복지지출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역 내 주택가격은 상당 경우 자가점유율과 역(inverse) 방향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면, 시 지역에서 자가점유율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과 경상일반

재원 증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에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지역 내 주택가격은 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가점유율은 도시유형(시·군·구)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복지지출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 내 시·군 지역에서는 부(-)적 관계성을,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양(+)적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먼저, 시군구 별 획일화된 주택가격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아파트 중위 매매가로 지역 내 주택가격을 대신하였으며, 군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부존재로 분석에서 제외된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복지지출과 관련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횡단적인 분석에 한정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비교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추후 데이터 보완 후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경준, 함영진, 이기동 (2013).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 지출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9(2). 141-156.
- 김도균 (2018).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도균 (2022). 자산소유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9(2). 115-147.
- 김진영 (2002).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한국재정학회. 17(1). 47-74.
- 김항기, 권혁용 (2017). 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 한국정치학보. 51(1). 261-285.
- 문수진, 이종열 (201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2). 141-156
- 양종민 (2022). 사적 자산축적 수준은 복지인식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험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1-65.
- 윤성원, 양재진 (2019). 한국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자체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가?: 2017년 지방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초연구. Social Science Review. 17(1). 47-74.
- 이승철 (2022).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 한국과 세계. 4(4). 81-116.
- 이철승, 황인혜, 임현지 (2018).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자산불평등, 보험욕구, 복지선호도, 2007-2016. 한국정치학회보. 52(5). 1-30.
- 임진영, 서정옥, 민효상 (2018).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2(3). 65-94.
- 정창희 (2003). 주택 가격의 상승요인과 전망.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31. 54-78.
- 최정은, 최영준, 김나리 (2020). 기초지방자치단체 현금복지 수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한국행정논집. 32(2). 269-299.
- 홍성준, 정문기 (202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지출 결정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2(1). 83-109.
- Ansell, B. (2014). The political economy of ownership: Housing markets and the welfare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8(2). 383-402.
- Castles, F. G. (1998). The really big trade-off: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w world and the old. Acta Pilitica. 33(1). 5-19.
- Conley, D. & Gifford, B. (2006). Home ownership, social insurance, and the welfare state. Sociological Forum. 21(1). 55-82.
- Kemeny, J.(1980). Home ownership and privat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4). 372-388.
- 인터넷 자료
-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5분위별 자산, 부채, 소득현황. www.kosis.kr
- 통계청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 성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www.kosis.kr
- 한국부동산원 (2020). 부동산통계정보: 주택동향마이크로데이터. www.reb.or.kr

◀ Abstract ▶

The Relationship of Homeownership Rate and Social Expenditure in Basic Local Governments

Seong-hun Se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housing ownership on welfare expenditure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 This study used 2 dependent variables, social welfare budget ratio and self social welfare ratio in the local governments, and a independent variable as housing ownership-rate in same level. For clearer estimation, the median apartment sales price, population, local tax payment per a person, par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majority party of the local council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These data were obtained through KOSIS, local finance 365, 2020 budget documents and so on.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was tes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SPSS 27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ity area, the housing ownership rate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valid negative(-) effect on both, social welfare budget ratio among general accounts and self welfare budget ratio among general financial resources. But, the median sale price of apart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direction of inverse. Also, this study was able to examine that the ownership rate is related to welfare expenditure in a significantly different ways on the city type(city, county, and district).

Keywords: homeownership, social expenditure, asset, trade-off

◆ 2023. 1. 13. 접수 / 2023. 2. 17. 1차수정 / 2023. 3. 19. 게재확정

*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Master of social welfare (bingo5934@naver.com)